

March 18, 2021

## COVID-19 Newsletter

### 서울특별시 「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」 행정명령 발령

서울특별시는 2021. 3. 17. 수요일 「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」(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39호)을 발령하였습니다.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2021. 3. 17.부터 2021. 3. 31.까지 기간 동안 (1) 외국인(비한국인)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고(개인인 외국인 사업주 본인도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), (2) 외국인 노동자(미등록 외국인 포함)의 경우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 행정명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번호	항목	내용
1	적용지역	서울특별시 전 지역
2	처분기간	2021. 3. 17.(수) ~ 2021. 3. 31.(수)(15일간)
3	처분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: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</li><li>- 외국인 노동자(미등록 외국인 포함):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것</li><li>※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</li><li>※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</li></ul>

법무법인(유한) 태평양의 뉴스레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,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**이 옥 래 변호사**  
T 02.3404.0684  
E [wookrae.lee@bkl.co.kr](mailto:wookrae.lee@bkl.co.kr)

**류 혜 정 외국변호사**  
T 02.3404.0262  
E [hc.elizabeth.yu@bkl.co.kr](mailto:hc.elizabeth.yu@bkl.co.kr)

4	처분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: 처분기간 동안 외국인 노동자에게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</li> <li>- 외국인 노동자(미등록 외국인 포함): 처분기간 동안 지체없이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것</li> <li>※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-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, 검사과정에서 제공된 정보는 방역 목적으로만 활용</li> <li>※ 외국인 사업주도 진단검사 대상</li> </ul>
5	효력발생시점	고시 즉시 효력 발생
6	법적근거	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“감염병예방법”) 제49조 제1항 제3호, 제81조 제10호
7	검사장소	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임시선별검사소
8	검사비	무료
9	위반에 따른 벌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염병예방법 제81조 제10호에 따른 200만원 이하의 벌금</li> <li>- 처분의 위반으로 발생하는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</li> </ul>
10	불복절차	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라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
11	문의처	서울특별시 120다산콜센터(02-120)